##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02

발의연월일: 2021. 11. 18.

발 의 자:윤재갑・홍성국・어기구

이동주 · 홍문표 · 위성곤

이개호 • 이학영 • 김민철

문진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의 경우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가해 견종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는 개물림 사고의 유형이나 가해 견종에 대한 통계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개물림 가해 견종에 대한 관리가 불가함.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양육 태도 등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회성, 공격성 등이 결정됨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 등에서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은 지원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는 실 태조사 사항에 개물림 사고의 발생 유형 및 가해 견종 등에 관한 사 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등에게 동물보호 및 동 물복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 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41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등에게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를 "명예감시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 ②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제46조에 따라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제4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개물림 사고의 발생 유형 및 가해 견종 등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
민의 책무) ① ~ ④ (생 략)	민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
	유자등에게 동물보호 및 동물
	복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를 위반하여 제46조에 따라 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
	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	③ 명예감시원의
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	
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u>제2항에</u>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 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생략)

② ~ ④ (생 략)

<u>4</u>	- <u>제3항에</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 1. ~ 7. (현행과 2	간은)
8. 개물림 사고의	_ , .
가해 견종 등에	
<u> </u>	
<u>5.</u> (원 % 세 0 호 가 ② ~ ④ (현 행과	_ , .